새 법령 소개

2018년 4월 주요 시행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일 4. 19.)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일 4. 2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 4. 25.)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일 4. 25.)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업종 신설 등을 통해 계란에 대한 안전을 강화합니다.



새 법령 소개

www.moleg.go.kr KOR 법 제 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이유】

-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공중위생법」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 ·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조).

다.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조제4항).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제8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 · 제조방법 ·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 · 대여하거나 제조 · 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바. 판매 ·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 대여하거나 제조 · 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새 법령 소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됩니다.

(4월 25일 시행)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 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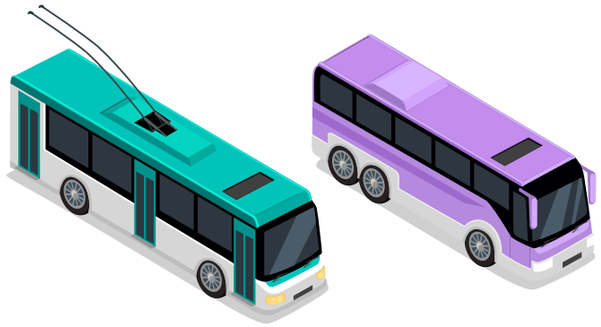
(4월 25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 · 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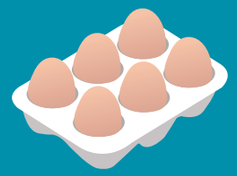
- 운송사업자에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아니한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새 법령 소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업종 신설 등을 통해 계란에 대한 안전을 강화합니다.

(4월 25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이유】

-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 운용하도록 하며, 식용란의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제12조제4항 신설).

나.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2조).

마.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신설).

법 제 처
www.moleg.go.kr

2018년 4월 시행법령 목록 (2018. 3. 26.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5217호	기획재정부	4. 1.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9호	기획재정부	4. 1.
3	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기획재정부	4. 1.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기획재정부	4. 1.
5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4호	기획재정부	4. 1.
6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0호	기획재정부	4. 1.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9호	법원행정처	4. 1.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5224호	기획재정부	4. 1.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8호	기획재정부	4. 1.
10	소득세법	법률	제15225호	기획재정부	4. 1.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기획재정부	4. 1.
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7호	기획재정부	4. 1.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24호	해양수산부	4. 1.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6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4. 1.
15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0호	기획재정부	4. 1.
16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9호	기획재정부	4. 1.
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4호	국토교통부	4. 1.
18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행정안전부	4. 1.
19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704호	국방부	4. 6.
20	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호	경찰청	4. 10.
21	인 · 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97호	교육부 등	4. 14.
22	해외이주법	법률	제15430호	외교부	4. 14.
23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8587호	국민권익위원회	4. 17.
24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9.
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1534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9.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63호	국가보훈처	4. 19.
27	국가재정법	법률	제15342호	기획재정부	4. 19.
28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국토교통부	4. 19.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5호	국토교통부	4. 19.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국토교통부	4. 19.
31	기상법	법률	제14786호	기상청	4. 19.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4771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4. 19.

새 법령 소개

33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
34	식품위생법	법률	제1483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
35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4824호	금융위원회	4. 19.
3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90호	금융위원회	4. 19.
37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483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
38	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14764호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4. 19.
39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4783호	환경부	4. 19.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505호	산업통상자원부	4. 21.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97호	국방부	4. 21.
42	건축법	법률	제14935호	국토교통부	4. 25.
43	경비업법	법률	제14909호	경찰청	4. 25.
4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4910호	경찰청	4. 25.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6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 25.
4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7호	국토교통부	4. 25.
47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4938호	국토교통부	4. 25.
48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법률	제14903호	교육부	4. 25.
49	교통안전법	법률	제14940호	국토교통부	4. 25.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4941호	국토교통부	4. 25.
51	국민연금법	법률	제14921호	보건복지부	4. 25.
52	노인복지법	법률	제14922호	보건복지부	4. 25.
53	도로교통법	법률	제14911호	경찰청	4. 25.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46호	국토교통부	4. 25.
55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	보건복지부	4. 25.
5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948호	국토교통부	4. 25.
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4호	보건복지부	4. 25.
58	아동복지법	법률	제14925호	보건복지부	4. 25.
59	약사법	법률	제14926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 25.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320호	국토교통부	4. 25.
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949호	국토교통부	4. 25.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7호	국토교통부	4. 25.
63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495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4. 25.
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7호	보건복지부	4. 25.
65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950호	국토교통부	4. 25.
6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14951호	국토교통부	4. 25.
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	보건복지부	4. 25.
6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490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4. 25.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915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4. 25.
70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국토교통부	4. 25.
71	천문법	법률	제149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5.
72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495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25.
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495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4. 25.
74	항공안전법	법률	제14955호	국토교통부	4. 25.
75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4956호	국토교통부	4. 25.
7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	국토교통부	4. 25.
77	환경보건법	법률	제14931호	환경부	4. 25.

법 제 처
www.moleg.go.kr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법제처는 국민이 입법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새령이가 선정한 이달의 입법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bit.ly/2CSh0Vf

※ 새령이가 등장하는 "4월 입법예고" 배너는 페이스북, 인터넷신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